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2024년 한시로 운영 중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안 제102조)

나.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108조)

다. 2025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제108조제3항 전단 중 “철거보상계약”을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으
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도”를 “2025년도”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 위) ① ~ ⑦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 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 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⑧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기 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 호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 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5년부 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문화산업·정 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 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 련된 교육·연구·정보처 리·유통시설용 토지

⑨ ~ ⑫ (생략)
제108조(비과세) ①·② (생략)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08조(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
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
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
다.

1. (생략)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
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
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
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② (생략)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

1. (현행과 같음)

2. -----

----- 2025년도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0